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발표 “미 품목관세, 핵심광물 공급망 고려”

[이주의 초점]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철강·자동차·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추가 (4p)

[위클리 뉴스]

12월 1일부터 수입물품 가격신고 개정 서식 적용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세청에 신고해야 국내 유통
가능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등 미 관세인하 확정 (7p)

[현장특파원]

중고차 수출 시 주의해야 할 전략물자·상항허가 수출통제
(11p)

[오피니언]

인도 뉴델리 관세사변호사가 전하는 인도 통관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16p)

- 인도 관세평가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p)

[판례 동향]

‘관세법’상 조건·사정에 대한 판례분석 (37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2월 8일(통관 제2158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정부,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운용방안 발표
...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중점

07 Weekly News

현장특파원

- 11** 중고차 수출, 사상 최대인데 '러시아 우회수출'
경고등 켜졌다

오피니언

- 16** 시선, 인도 통관
오한흠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한·인도 CEPA 활용의 첫걸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장재원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인도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관세행정실무해설

- 25**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와 제3국 발행
송장거래
- 34** 질의응답사례
배터리 해외 직구 통관

판례동향

- 37** 관세판례해설
「관세법」상 조건·사정에 대한 판례분석

품목분류동향

- 42** 세번 바로잡기
찌든때 없애는 연마세정제

최신개정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2026년 정기 할당·탄력관세 운용방안 발표 ... 통상환경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 중점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 겪는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자동차산업 품목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재자원화 원료가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됐다. 반면 올해까지 시장접근물량 증량 품목이던 대두가 내년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월 2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와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기본 관세율 3%를 내년 상반기까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0% 또는 2%로 인하하고,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하반기에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한다.

반면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하기로 했다.

● 에너지(기본관세율 3%)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 ●

구분		2025년	2026년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세율	연중 0%	상반기 0%, 하반기 1%
	물량	(LPG) 수입 전량 (원유) 3,900만배럴	(LPG) 수입 전량 (원유) 3,300만배럴
LNG	세율	^{1Q} 0%, ^{2Q} 2%, ^{3Q} 2%, ^{4Q} 0%	^{1Q} 0%, ^{2Q} 2%, ^{3Q} 2%, ^{4Q} 1%
	물량	수입 전량	수입 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	세율	연중 0%	연중 0%
	물량	2억배럴	1억 7,000만배럴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내년도도 유지된다.

설탕 인하 세율은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과 동일하게 5%로 적용하는 대신, 할당 적용물량을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했다.

또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긴급 할당관세 지원 12개 식품원료 품목 ●

품 목 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해바라기씨유	5	0	5,000	1~6월	긴급 연장
냉동딸기	30	5	5,000	1~6월	긴급 연장
기타냉동과일	30	5	1만	1~6월	긴급 연장
기타조제과일	45	15	7,500	1~6월	긴급 연장
사과농축액	45	15	1,500	1~6월	긴급 연장
코코아가루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코코아페이스트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코코아버터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으깬 파인애플	45	15	8,000	1~6월	긴급 연장
으깬 감귤류	45	15	1,000	1~6월	긴급 연장
과일컵테일	45, 50	15, 20	5,500	1~6월	긴급 연장
계란가공품	8, 27, 30	0	4,000	1~6월	긴급 연장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궤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야	품목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철강	페로니오븀	3	0	수입 전량	연중	
	고탄소 페로크롬	2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저탄소 페로크롬	2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페로니켈	3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니켈 궤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티타늄 궤	2	0	수입 전량	연중	
	단조 압연롤	8	0	수입 전량	연중	
	페로실리콘	2	0	수입 전량	연중	
	형석(97% 이하)	2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분야	품목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자동차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차체용)	8	0	9,000	연중	
	백금	3	0	13	연중	
	이온교환막	8	0	수입 전량	연중	
	고전압 릴레이	8	0	1,300	연중	
	영구자석	8	0	6,000	연중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전기차 배터리용)	8	0	1만 9,000	연중	신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폐촉매, 폐인쇄회로기관,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를 신규로 할당관세에 포함했다. 또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 비료, 농약, 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야	품목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재자원화	귀금속 잔재물	2	0	수입 전량	연중	
	폐촉매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티타늄 웨이스트·스크랩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폐인쇄회로기관	3,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블랙매스	2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폐배터리	3,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정부는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했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동,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팔·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증량하되 통관 실적을 감안해 증량 규모는 올해 대비 일부 축소됐다. 하지만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와 생산 모두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증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당관세와 탄력관세 상세 내용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무역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할당관세와 탄력관세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하구현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가격신고 서식 개정 ··· 12월 1일부터 적용

가격신고 서식에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이 삭제되고, 동일하고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 번호 기재로 과세자료 제출이 같음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가격신고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에는 가격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가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 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했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도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개정 서식에는 기존 수입신고서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같음된다.

관세청은 10월 30일부터 동일 물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신고인이 특정 건에 대해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사후에 잠정가격신고도 허용하고 있다. 단순 실수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잠정가격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후 구제 방법이 없어 본 세금 외에 추후 확정된 가격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 하구현 기자 |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관세청에 신고해야 국내 유통 가능해져

앞으로 특정 무계목강관 제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수입자와 유통업자에게 유통 단계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에 무계목강관을 신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계목강관은 이름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관세청이 유통이력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의 HS Code는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제 7304.39-0000호, ▲제 7304.41-0000호 두 개다.

12월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 일자, 수량, 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계목강관(사진: 관세청)

유통이력 신고는 UNI-PASS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또는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서류를 작성해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 하구현 기자 |

자동차·부품, 목재 제품 등 미 관세 인하 확정 … 대미 수출 기업 숨통 트여

대미 수출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대미 수출 기업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12월 3일(미 현지시각) 연방관보에 사전 공개된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 자로 소급해 15%로 인하된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동일하다.

시나리오	미 MFN 관세율	한·미 FTA 특혜관세	총관세
1	15% 미만	(충족 여부 무관)	15%
2	15% 이상	충족	15%
3		미충족	해당 MFN 관세율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 추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 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돼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 하구현 기자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명확한 기준 나왔다” 해석 논란 줄어들 전망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공개하고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따르면, 우선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관한 미발급 조항은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종류를 ①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 ②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③ 권리사 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납세자가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미발급과 관련해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동일한 물품을 상이한 세번으로 적용한 오류, 수수료·중계료 등 성격이 동일한 수수료의 누락, 생산지원(물품, 용역) 비용 누락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정통지에도 보정·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미발급 조항은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관세무역동향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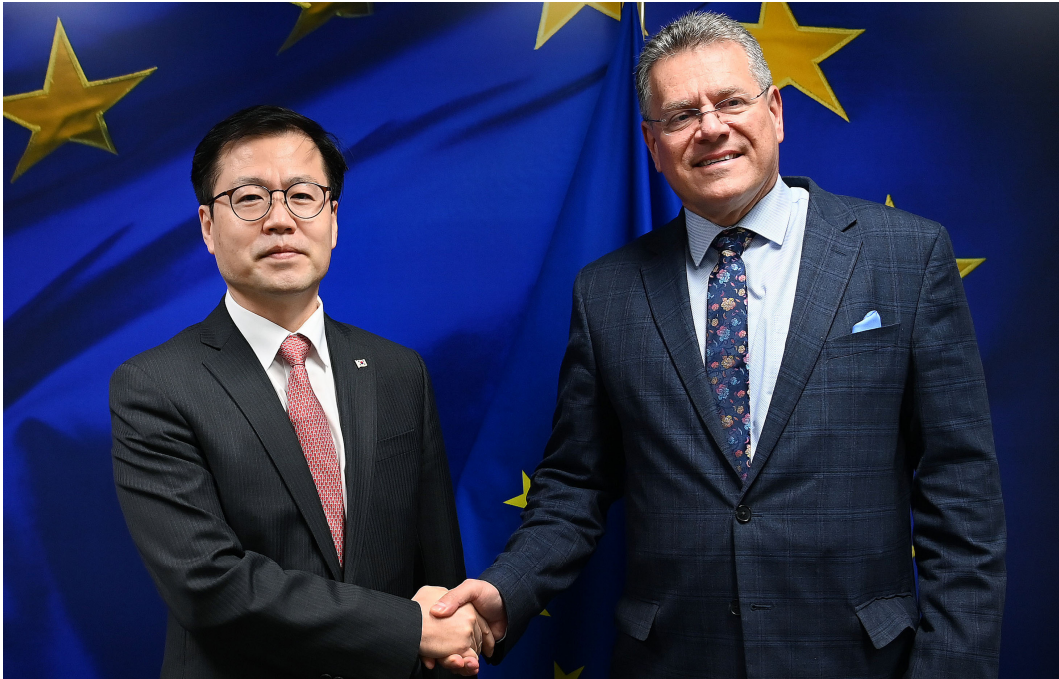
| 김성은 기자 |

한·EU, 경제안보·공급망 아우르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 산업부, 제조·산업 잠재적 위험 관리·신통상 미래 협력강화 제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아우르는 최상위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양측이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2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고위 관계자와의 ‘한·EU 간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에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뜻을 모으고, 산업부가 한·EU 협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위한 양대 축을 제시해 마련됐다. 산업부가 제시한 양대 축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와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사진 : 산업통상부)

또 양측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고위급 교류 계기에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의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EU의 철강 신규 수입규제 도입 시 한국산 쿼터 확보, 배터리 투자 기업 지원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의 합리성 제고 및 이중규제 방지요청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 우리 정부의 우려도 전달했다. | 하구현 기자 |

정부, EU 발칸 지역 제조·물류 거점 세르비아와 CEPA 공식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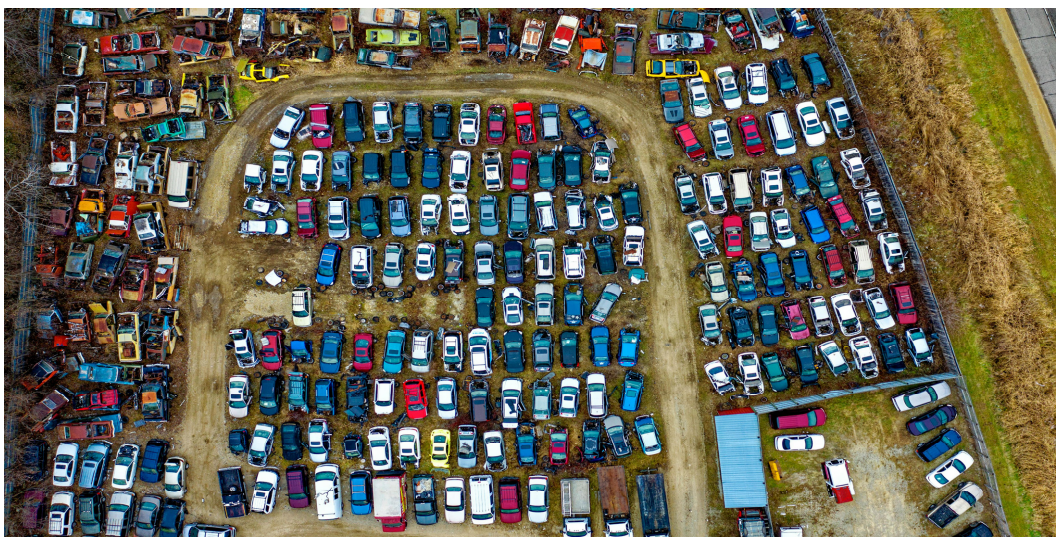
유럽연합(EU) 후보국이자 발칸 지역의 제조·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이 12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작년 9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세르비아와의 분야별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협정문 구조와 협상 범위에 대한 조율을 마침에 따라 이번 제1차 협상을 개시하게 됐으며, 협상에서 상품 양허, 원산지, 통관, 경제협력 등 총 10개 분야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손호영 직무대리는 “세르비아는 EU 인접 시장과 발칸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근 전기차·배터리·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중요한 신흥 파트너다”라며, “세르비아와의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 김성은 기자 |

중고차 수출, 사상 최대인데 '러시아 우회수출' 경고등 켜졌다

대러 제재 회피 시도 증가 … 정부·세관, 모니터링·심사 전방위 강화



국내 중고차 수출이 심상치 않다. 2022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6월 기준 수출액은 33억달러에 달했고, 연말이면 6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러시아 특수', 시리아 내전 종식 이후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 중고차 선호 확대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세관별 중고차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단연 인천이 1위다. 인천에서만 제8703호로 분류되는 승용차가 45만 5,000대 수출됐으며, 부산은 5만 1,000대로 뒤를 이었다. 승합차 기준 수출금액으로만 봐도 인천은 35억 6,700만달러로 2위 부산(6억 400만달러)을 크게 앞선다.

이렇게 중고차가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전략물자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11월 20일 인천에서 열린 중고차 수출업계 대상 무역안보 설명회에서도 산업통상부, 관세청, 무역안보관리원 관계자들은 "최근 러시아 우회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대러시아 제재 속 우회수출 증가 … 실제 적발 사례도 확인

지난 5월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산업분석'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중고 승용차 수출량은 53만 3,000대, 수출액은 47억 4,000만달러에 달해 이미 세계 주요 중고차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주요 수출국은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로 자동차 시장이 중고차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다.

수출량 기준 1위는 리비아(12만 1,000대), 2위는 키르기스스탄(7만 2,000대)으로 양국이 36.2%의 비중을 차지했고, 수출액 기준 1위는 키르기스스탄(14억 9,000만달러)으로 31.4%를 차지하며 유일하게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대륙별로 보면 수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동, 수출금액이 가장 큰 곳은 아시아였다. 이는 주요 지역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가격이 각국의 경제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정책전략실 정준하 연구원은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 저가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활용되면서 준수한 상태의 고가 중고차 위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구분	수출량			수출액			평균가격 (달러/대)
	2024년(대)	비중	증감율(%)	2024년 (100만달러)	비중(%)	증감율(%)	
리비아	12만 1,148	22.7	△17.1	214	4.5	△23.6	1,758
키르기스스탄	7만 1,923	13.5	59.0	1,489	31.4	57.2	2만 703
튀르키예	4만 5,013	8.5	0.2	103	2.2	32.7	2,266
러시아	2만 7,999	5.3	8.1	588	12.4	△8.3	2만 1,001
UAE	2만 7,896	5.2	49.8	233	4.9	31.8	8,352
전 세계	53만 2,780	100.0	△3.7	4,743	100.0	6.7	8,900

출처 : 산업연구원

정 연구원은 “한국 중고차 수출은 고급화 추세를 보이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면서도 “업체 상당수가 영세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만큼,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도 배기량 2,000cc 초과 내연기관 중고차와 전기차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으며, 일본 또한 1,900cc 이상 중고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근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제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0월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키르기스스탄 국적 A·B씨를 「대외 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배기량이 높은 고가 수입차 40여 대를 수출 허가 없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관계자는 “추가 연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키르기스스탄으로 향한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2% 증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증가세에 러시아를 목적지로 하는 우회수출 수요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 승용차 종류별 HS Code 및 상황허가 품목 ●

구분	차량 종류	HS Code	상황허가 대상품목 (고시 별표 2-2)
모델 규격	성상주행용/골프용차	제8703.10호	통제번호 1036호
	불꽃점화식 (가솔린,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제8703.23-9010호 제8703.23-9020호	통제번호 1036-38호
	불꽃점화 (가솔린, 3,000cc 초과)	제8703.24호	통제번호 1039호
	압축점화 (2,000cc 초과 2,500cc 이하)	제8703.32-9010호 제8703.32-9020호	통제번호 1040-41호
	압축점화 (디젤, 2,500cc 초과)	제8703.33호	통제번호 1042호
	하이브리드(전체)	제8703.40호, 50호, 60호, 70호	통제번호 1043-46호
	전기차, 기타	제8703.80호 제8703.90호	통제번호 1047-48호

출처 : 서주원 사무관 발표 자료

서주원 사무관은 “하이브리드·전기차에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을 적용해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신고 하는 업체들이 세관에 다수 적발됐다”며, “작은 오류라도 상황허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러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상황허가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수출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사무관은 러시아행 중고차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상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러시아 인근 국가로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관세청에서는 전국세관에 수출통관 심사 강화 지침을 전달했다. 허가대상 여부, 수출신고서와 상황허가서 내역 일치 여부 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 사무관은 “최종목적지가 러시아라면 상황허가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연기관 자동차로 신고했는지부터 러시아와 인근 국가 간 목적국을 변경하는 등 수출신고 정정신청 건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상황허가 미구비 시 보완 통보, 통관보류, 조사부서 고발 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건별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제원·연료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조사별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차량 모델명만으로 동력원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서 사무관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에게 수출 중고차의 실제 최종목적지가 러시아인지 한 번 더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만약 수출물품의 최종목적지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인근 국가이고 의심이 든다면 최종구매자·사용자에 관한 설명자료를 수출자에게 요구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고차 수출 확대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전략물자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와 관련해 우회수출 거래에 우연히

연루될 위험도 존재해 기업으로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산업부, 관세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 기관은 “최종목적지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출하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히며, 우회수출 모니터링과 세관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중고차 수출 관련 Q&A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의 서현우 사무관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임수성 책임연구원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조인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A. HS 6단위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상황허가서 또는 면제 시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고 HS 10단위와 별도로 구체적인 품명·기술사양 확인이 필요한 302개 품목은 ‘비해당’ 전문·자가판정서, 상황허가서 또는 면제 시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수출신고 시 자동수리됐다면 상황허가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

A. 수출 시 검사(C/S, Cargo Selectivity)는 선별적으로 운영돼 모든 수출신고 건을 검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됐더라도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돼 무허가 수출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수출신고 전 반드시 판정 절차를 거칠 것을 권장한다.

Q. 해외 법인에서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하나?

A. 해외 법인이 국내 소재한 기업과 무관하게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한국정부의 수출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국내 기업이 계약의 주체로서 해외 법인 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해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해 한국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Q. 전략물자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수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적합한가?

A. 산업통상부와 상의해 자진신고 절차를 밟기를 권장한다.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경감 요소로 고려된다.

Q. 전문판정은 한번 받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

A.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통제 기준이나 통제번호가 개정되면 그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시 개정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Q. 다수의 품목을 한 번에 전문판정 받을 수 있는가?

A.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판정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품목을 한 번에 신청할 경우 분리 신청하도록 보완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품목이 많을 경우 사전에 심사판정실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해당 분야 담당 연구원이 직접 방문 상담하는 판정 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Q. 전략물자 수출허가 후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됐다면 수출이 불가능한가?

A.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로 지정되기 이전 기수출한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잔여 수출물량이 있다면 일단 수출을 중단하고 허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Q. 최종사용자 서약서에 대표자 서명이 필수인가?

A. 수출허가 심사 시 최종사용자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종사용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대표자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전략물자 관리 책임자가 서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Q. 관세사가 화주 대신 전략물자 판정서 및 허가서를 발급받아도 되나?

A.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판정서 및 허가서는 ‘수출하려는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관세사가 한·인도 CEPA 활용 방안에 대해 조언했다.

한·인도 CEPA 활용의 첫걸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한·인도 CEPA 활용 방안 ② -



오 한 흠 | KOTRA 뉴델리무역관(관세사)

(※ 본 콘텐츠는 10.20. 발행된 본지 제2151호 '오피니언-시선, 인도 통관'에서 이어집니다)

한국과 인도의 교역량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후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인도는 한국의 수출액 기준 7위(약 186억달러)에 달하는 국가다. 교역량이 증가하는 만큼 인도로 수출 및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다양한 통관애로를 접하게 된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한·인도 CEPA 적용과 관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자면,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CEPA에 대해 기존에 알지 못했거나, 알았지만 사전에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인도 CEPA의 대상 및 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다고 오해하거나, 수출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또는 수입통관 이후 등 뒤늦게 한·인도 CEPA를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본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 출항 전에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하거나 사후적용을 하려면 다양한 통관애로가 발생하곤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인도 세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한·인도 CEPA에 관해 확인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호에서는 한·인도 CEPA에 대한 개념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1. 한·인도 CEPA의 기본 개념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7월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사진 : 산업통상부)

우선 기본적인 FTA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즉, 쉽게 생각하면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서로 관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협정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모두 협정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협정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출물품은 FTA상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대부분은 HS Code별로 그 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다. 즉 한국에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이 협정상 한국산 물품은 아니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

2.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

1)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

우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하다. 모든 FTA 및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HS Code 분류 없이는 이미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HS Code를 의례 사용하던 것을 검토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분류하는 것이다. HS Code는 통상 5년마다 개정을 통해 변경, 삭제 및 신설되는 경우가 있으며, 더 나아가 수입국 세관과 수출국 세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상이한 HS Code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HS Code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HS Code 적합성 판단 및 수입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2)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정확한 HS Code 판단 이후에는 해당 HS Code에 따른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인도 CEPA의 경우 대부분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창출비율 35% 이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결합기준이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란 수입한 원재료, 반제품의 HS Code 6단위와 최종 수출물품의 HS Code 6단위가 상이해야 하는 기준이다.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반제품의 경우 역내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6단위 HS Code가 변경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외로부터 수입된 원재료, 반제품인 경우 수입 이후에 역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일어나야 최종 수출물품이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증빙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원재료, 반제품의 6단위 HS Code는 기본적으로 수출물품의 6단위 HS Code와 상이해야 하며, 역내 가공 이후 6단위 HS Code가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역내부가가치 창출비율이란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역내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인도 CEPA상 역내부가가치 창출비율은 일명 RVC(Regional Value Content)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제법이다. 이는 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하고, 그 남은 부분을 역내부가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즉, 수출물품의 수출가격[FOB(Free on Board) 가격] 중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제외한 비중이 수출물품의 수출가격의 35% 이상이면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된다. **한·인도 CEPA상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부분 앞서 설명한 6단위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 35% 이상 창출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서 인보이스(Invoice), 선적서류, 수출신고서,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인도 세관의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산지증

명서 이외에도 'Form I'라는 독자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수출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작성 방식 등이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미리 Form I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Form I 서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Form I 서류가 미리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 시간 및 통관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4) 보관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수입자는 해당 물품 수입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3. 시사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일부 수출자는 이를 수입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한·인도 CEPA와 같은 협정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인도 CEPA를 이용한다면 우리 수출기업은 협정국 외의 국가의 물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인도는 FTA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국, 중국 등과 FTA가 체결돼 있지 않기에, 한·인도 CEPA의 효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원활히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한·인도 CEPA에 대한 이해가 높고 협조가 잘 되는 수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출기업 역시 한·인도 CEPA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수다. 한·인도 CEP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한·인도 CEPA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한·인도 CEPA의 대상과 원산지 결정기준 그리고 증빙서류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주요 국과의 다자동맹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한·인도 특별전략 적동반자관계를 수립했지만, 여전히 인도 진출과 관련해 복잡한 규제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상존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크다.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인도 관세법과 관련해 인사이트를 제안했다.

인도 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 인도 관세평가 분쟁의 이해와 대응



장 재 원 |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미국변호사)

1. 인도 관세법상 거래가격 수용의 기본 원칙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은 수입물품의 관세가격 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는 실질적으로 지급됐거나 지급될 거래가격을 관세평가의 1차적 기준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인도 대법원(Wipro Ltd. v. Assistant Collector of Customs)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제14조의 목적이 "실제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그 실질 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적용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수입물품이 인도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돼야 한다.
- (2) 수입 시점과 장소에서 인도돼야 한다.
- (3)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4) 해당 가격이 물품 매매에 있어 유일한 대가여야 한다.

또한, 제14조 제1항 단서는 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수료, 중개료, 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용, 로열티 및 라이선스 사용료, 국제운송비, 보험료, 하역비 등 다양한 비용이 매수인에 의해 지급된

경우, 해당 비용 역시 거래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이 이러한 비용을 매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금전적 부담은 관세평가 시 거래가격 산입 대상이 된다.

만약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2) 신고된 거래가격이 평가 기준으로서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별도의 '관세평가 규칙(Customs Valuation Rules, 2007)'에 따라 대체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인도 간접세·관세청(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은 '관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특정 물품에 대해 고정 관세가격을 관보 고시를 통해 지정할 수도 있으나,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2. 거래가격 수용 조건과 대체평가 절차

'관세평가 규칙'은 신고된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 동시에 충족해야 할 요건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거래가격 수용의 구체적인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승인되지 않은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야 한다 :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제한이 법률상 요구되거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한, 거래가격이 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불확실성에 종속돼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미래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물품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요건에 위배된다.

(2) 매도인이 부당한 이익을 은닉해서는 안 된다 : 매수인이 재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가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반드시 적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없다.

(3) 거래 당사자 간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추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거래가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형으로는 공통의 이사, 주주, 동업자, 지배·피지배 관계, 가족 구성원, 한쪽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관세당국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제4조 내지 제9조까지의 대체 평가 방법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신고되지 않은 로열티 지급, 허위 송장 작성 등이 거래가격 불수용의 대표적 조사 사유로 작용한다.

3. 가산 항목의 법리와 실제 적용(로열티, 수수료, 비용)

‘관세평가 규칙’ 제10조는 실제로 지급된 거래가격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비용과 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가산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와 중개료 : 수입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산입돼야 하지만, 구매 수수료는 제외된다.

(2) 포장 및 용기 비용 : 수입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용기 및 포장 비용 역시 과세가격에 합산된다.

(3) 매수인이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재화·용역 : 물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 매수인이 제공한 재료, 부품, 공구, 금형, 그리고 인도 외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설계 용역의 가액이 과세가격에 추가된다.

(4) 로열티 및 라이선스 수수료 : 수입과 관련해 매수인이 조건부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수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산입해야 한다. 특히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 기술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경우, 이 지급금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5) 후속 판매·사용으로 매도인에게 환수되는 수익 : 물품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따라 매도인에게 환수되는 수익 중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과세가격에 추가해야 한다.

판례 역시 이러한 가산 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Jindal Photo Films Ltd. v. Commissioner of Customs(CESTAT 2002) 판례에서는 노하우와 연계된 라이선스 수수료가 송장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매의 조건이 명백한 경우 반드시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관세평가 분쟁 주요 요인과 실무적 대응 기준

수입물품의 평가 과정은 수입업자와 관세당국 간 빈번한 분쟁의 초점이 되며, 분쟁은 주로 세가지 대표적인 쟁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1) 특수관계에 기반한 거래 : 관세당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송장 가격이 실제 정상 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수입업자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거나, 동일 물품의 공개시장 가격과의 근사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신고 가격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특수관계 신고 누락이나 미공개 제휴 관계 적발이 분쟁의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다.**

(2) 로열티·라이선스 수수료 및 기타 지급금의 가산 여부 : 송장에 포함되지 않은 로열티나 라이선

스 수수료가 별도로 지급되거나 약정된 경우, 관세당국은 과세가격이 과소 신고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하우 수수료가 수입 이후 약정됐더라도 그 실질이 판매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가격 산입 대상으로 봐야 한다.

(3) 허위 및 저가 신고 : **수입업자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행위는 만성적인 분쟁 원인이다. 관세당국은 공급자의 공개 가격표, 과거 수입 가격, 같은 시기 동일 물품 가격 등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 신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저가 신고가 확인되면 시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적 허위 신고는 ‘관세법’ 제112조 및 제114A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간주돼 중대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포탈 의도가 명백할 경우 물품 몰수(제111조 제m호)도 가능하다.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관세평가 규칙’이 실무적 지침 역할을 하며, 특수관계 정의(제2조 제2항), 필수 가산 항목(제10조), 그리고 거래가격의 정상가격 인정 기준 등이 엄격히 적용된다.

5. 관세평가 분쟁의 행정절차 및 전략적 컴플라이언스

관세당국이 신고된 거래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세법’ 제18조에 근거해 잠정평가(provisional assessment)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과세가격특별조사부서(SVB, Special Valuation Branch) 회부 : 특수관계 인정, 비정상적 가격 구조, 정보 누락 등 명확한 이의 사유가 있을 때 관세청장(Commissioner of Customs)은 사건을 SVB에 회부해 심층 조사에 착수한다.

(2) 추가관세예치금 납부 : 수입업자는 조사 개시 시점에 보증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신고가격의 1% 수준의 추가관세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협조가 불충분할 경우 비율이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다.

(3) 자료 제출 : 수입업자는 지정된 서식(Annexure-A, Annexure-B)을 통해 거래 내역, 특수관계 현황 및 지급금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의 답변 기한이 부여된다.

(4)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통지(SCN, Show Cause Notice) : SVB의 조사 결과, 신고가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확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항에서 수입업자에게 이의제기통지가 공식 발부된다. SCN에는 신고가격 수용 불가 사유와 함께 관세당국이 산정하는 재평가 금액 또는 대체 가격 산정방법이 안내된다.

(5) 결정문 발행 및 제재 : 심판관(Deputy/Assistant/Joint Commissioner)은 소명 자료 검토 후 관세액, 이자, 과징금 부과 내역을 담은 결정문(order)을 발행한다. 신고가격의 부정확성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12조 및 제114A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관세청 상급부(Appeals)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심판원(CESTAT, Customs Excise Tax Appellate Tribunal)과 상급 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

전략적 컴플라이언스 및 예방 방안으로 다음 사항이 권고된다.

(1) 문서화 : 구매 계약서, 송장, 지급 기록, 로열티 계약 등 모든 거래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 이전가격 분석(Transfer Pricing Study) 자료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2) 정상가격 원칙 준수 : 신고가격은 시장 거래 가격 수준을 반영해야 하며, 유사 수입 사례나 현지 시장 가격과의 벤치마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가격 적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사전심사(Advance Ruling) 활용 : 평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수입 전에 '관세법' 제28H 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요청해 평가 방법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4) 자진 납부 이익 활용 : 신고 오류가 고의가 아니며 조기에 발견된 경우 자진 납부를 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결국, 수입업자는 법정 요건, 특히 특수관계의 부존재와 모든 추가 비용의 완전한 공시를 충족하는 한편, 거래가격 산정 및 관련 내역을 신중하게 문서화함으로써 관세 재평가 위험을 예방하거나 분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와 제3국 발행 송장거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한·미 FTA 적용 시 제3국 발행 송장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정보' 기재 여부는 송장 작성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은 수출국에서의 원산지 판정 절차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또는 작성), 수입국에서의 수입국 법령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중요하다. 즉, 수출입 당사국의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모두에게 관련 의무가 존재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는 물품에 대한 원재료내역, 제조공정, 가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해야 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역거래 환경에서는 FTA 당사국 내에 소재하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간 거래를 통해 물품이 이동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무역업자가 개입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한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 수입자가 수취하고,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흐름이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란 제조·가공이 수행된 국가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제조·가공됐다는 사실만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자료와 함께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가 구비돼야 한다.

그런데 각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동일하지 않다. 또한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관발급 FTA도 있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FTA도 있다.

자율발급은 일반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통일된 서식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FTA와 달리 작성 양식이 정해져 있는 FTA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FTA가 존재한다.

또한 한·EU FTA와 같이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협정이다.

협정에서는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에 관해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certification)으로 이뤄지거나 ② 증명이 없어도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knowledge)만으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는 원산지증명 절차 없이 수입자 인지(knowledge)에 의해서 특혜관세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이 이뤄진다고 해도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서류나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돼 제출되고 있다.

또한 ①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면, 원산지증명이 작성될 때 한·미 FTA는 8가지 기재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가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해진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다.

■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ion need not be made in a prescribed format, provided that the certification is in written or electronic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lements: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러나 한·미 FTA의 자율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없이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된 서식조차 없는 점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 권고서식을 마련해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무조건 해당 권고서식을 따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당연히 권고서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미 FTA상 8가지의 기재사항에 대해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으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 이미지 좌측). 또한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는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미국측 제공 자율발급)을 안내하고 있다(다음 이미지 우측).

CERTIFICATION OF ORIGIN

US-Korea FTA (19 CER 10 Subpart B)
www.dhs.gov/fta/usa/usa-trade-agreements/usa/

Country:

IMPORTER

Name:

Address: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Phone:

Email:

EXPORTER

Name:

Address: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Phone:

Email:

PRODUCER

☐ Same as Exporter

Name:

Address: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Phone:

Email:

Additional Information / Notes

Collective (DHSUS 608 1401) / USFTA Art. 4.10 (Summary):
 Criterion 1 (DHSUS / Art. 4.10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Criterion 2 (DHSUS / Art. 4.10B): Non-originating materials undergo processing that shifts and confers PRC requirements.
 Criterion 3 (DHSUS / Art. 4.10C):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Korea or US from materials classified in Criterion 1 or 2.
 Product for which preference is claimed

Invoice Date	HTSUS #	Description	Quantity	Origin	Criter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 (2007)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s:
 Name & Title:

Date:

Phone:

Email:

ATTACHMENT A

DATA ELEMENTS FO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exporter of the good. (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producer of the good. (If known).
- Description of good:**
The description of a good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and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 Preference criterion:**
The rule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b) or Article 6.1 of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a product-specific rule specified in General Note 33(o) or Annex 4-A or 6-A of the Agreement, please be specific as to which rule was applied.
- Single shipment:**
Provide the commercial invoice number.
-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mm/dd/yyyy to mm/dd/yyyy" format. (12-month maximum)
-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This field shall include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and e-mail.
-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이 외에도 회사별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따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업무적인 실수를 줄이기 위해 권고서식을 통해 원산지증명을 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모든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FTA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미국산 철강 핀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증명서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했는데,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는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안내됐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한·미 FTA 적용 시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FTA에 따른 특혜관세 대우는 FTA 체결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입자 간 거래가 이뤄져야 하지만, 무역실무상 거래의 흐름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상 ①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한 거래를 인정할 것인지, ② 인정한다면 추가적인 요건(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정보 작성 등)이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2) 제3국 송장거래 FTA 적용 가능 여부

FTA에서 거래당사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주체지만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 및 원산지와 관련이 깊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자는 협정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 및 입증 책임이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생산자 또한 당사국에 소재해야 하며 물품의 생산 및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등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수입자 또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자로 다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방에 소재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무역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오퍼상, 중계무역). 또는 유럽 또는 북미 등 아시아가 본사가 아닌 다국적기업으로서 물품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생산되지만, 아시아 시장의 관리는 아시아의 지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3국의 수출자가 양 당사국 간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 요건이 위반돼 FTA 적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3국의 무역상이 개입한 경우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질문 & 답변 사례를 살펴본다.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미국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해 작성 및 서명한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돼 있더라도 해당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하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정적용신청서 작성방법에서 수출자의 정보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인 경우에도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계약상대국(미국) 소재 수출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는 거래의 관계에서의 거래당사자 확장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지 물품의 제3국 이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제3국 송장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각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FTA 체결당사국 간 운송이 이뤄져야 하며,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때에도 각 협정에서 정하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3) 제3국 송장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임을 표시해야 할까?

우리나라와 발효된 일부 FTA에서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상 이를 표시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ASEAN FTA가 해당되는데, 한·ASEAN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21조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제13번란에 제3국 송장에 대한 표시와, 해당 증명서 7번란에 제3국 발행송장에 대한 회사, 이름, 국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인데도 제3국 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이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워진다.

다만 모든 FTA가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한·호주, 한·중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따르면 제3국 송장이 발행될 경우 비고(Remarks)란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아도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호의 한·미 FTA에 관한 관세청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한·ASEAN FTA와 같이 제3국 송장에 관한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 따른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정보' 기재 여부는 송품장 작성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4) 제3국의 당사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한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

제3국 송장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은 협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제3국 송장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자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는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 문구를 제3국 송장 자체에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산지신고 문구 자체는 당사국의 수출자(생산자)가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계회사인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해당 업체가(선적서류도 발행) 송품장(Invoice)상에 선적지와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표기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인지 문의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EU 회원국인 스페인을 원산지로 하고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경우라면, 스페인에 소재하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처럼 제3국 송장 건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FT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여느 협정들과 달리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될 수 있다.

당사국에 소재하는 거래당사자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협정과 달리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소재지가 역외라고 해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 간 2018년 합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2018.11.14.)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역외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①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수출자(이하 ‘역외 수출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수출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수출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1. 영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

2. 훈령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훈령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
 - ②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생산자(이하 '역외 생산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물품의 생산이 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통관 관련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 가능하거나, 역내 생산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수입통관 또는 검증대상 선정 시 세관심사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3국 송장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건의 검증 요청 및 서류 제출에 대한 확률이 일반 무역환경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계무역을 하는 업자의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원산지검증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한·미 FTA의 경우 역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자와 역외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주체와는 별개로 해당 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고, 간접적으로 규정됐지만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등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와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대미 상호관세가 합의된 이후에도 최혜국 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관세율 또는 한·미 FTA 특혜관세에서 15%(상호관세)가 추가되는 상황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해서 한·미 FTA 활용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합의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브리핑 자료(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 자료)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②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있어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율 중 적용 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제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MFN 관세와 추가되는 제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설정했다.

여기서 한국산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특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더욱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한·미 FTA보다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충족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경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미 FTA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국 관세 인하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수출기업 및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에 맞춘 원산지 관리 전략을 지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배터리 해외 직구 통관

배터리를 해외 직구해도 통관 가능한가요?

해외 직구(수입)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의 ‘리튬이온 축전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8507.6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호에 분류되는 경우 아래의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 제8507.60-9000호 수입요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지
 -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위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춰야 통관이 가능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물품 중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 상용물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라면 모델별로 1대에 한해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대상이나 요건 면제 가능 여부 등은 각 개별 법령을 소관하는 요건 확인 기관에 문의해야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확인 기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인증 표준 정보센터(1381), 민원실(043-870-5600~2)

FTA / 분할선적 수출과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를 1건으로 진행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았으나,
분할선적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수출상대국에서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 시 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 단위로 작성하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수출신고된 물품을 분할해 적재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품목분류 / 패드형 부목의 HS Code

손상된 부위나 신체 일부를 고정하기 위한 패드형 부목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제9021호 해설서에서 “(II) 골절 치료용 부목(splint)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 골절 치료구(fracture appliance)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거나 보호하기 위해),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또한 탈구나 그 밖의 관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곳에도 사용한다. 이러한 품목 중 일부는 환자에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예 : 선·아연제·목제의 (下肢)용 부목·석고붕대부목·늑골의 골절치료구 등], 또 다른 일부는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에 고정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부목(splint or cradle) 등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보호용 침대부목, 튜브제의 골절신장기 등]. 다만, 후자의 기구가 침대·테이블이나 다른 지지기구의 일부를 구성하여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켄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이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의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의 ‘기타’에 해당된

다면 제9021.10-9000호로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9000	기타

환급 / 해외 직구 물품의 FTA 사후적용

**해외 직구로 물품을 받은 후 FTA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1항에 따라, 사후적용신청을 해야 하고, 사후적용 승인 후에는 과납한 세액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관세환급 절차 ① FTA 사후적용 신청 → ② 승인 → ③ 관세환급 신청

* FTA 사후적용신청 및 관세환급 신청 세관 :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또는 납세심사과)

□ FTA 사후적용 신청 시 제출 서류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관세 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환급신청서(유니패스로 신청 가능)
-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경정청구 승인내역
- 통장사본 등

□ 환급신청 방법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나 전산 사용법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조건·사정에 대한 판례분석

김민주 |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정송팀)

1. 들어가며

「관세법」 제30조 제3항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1평가방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거래 가격의 높고 낮음만을 문제삼는 조항이 아니라, 거래가 어떤 구조에서 형성됐는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의무관계가 가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최근 법원 판결들을 보면 조건·사정의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접근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방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상 정상으로 보이는 구조 속에서도 거래성립 자체가 특정 조건에 종속돼 있다면 조건·사정이 개입한 것으로 본 사례들도 등장한다.

이번 판례해설에서는 최근 주요 판례들의 판단 흐름을 비교하고, 조건·사정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함으로써, 유사 사안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건 또는 사정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중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중략> ...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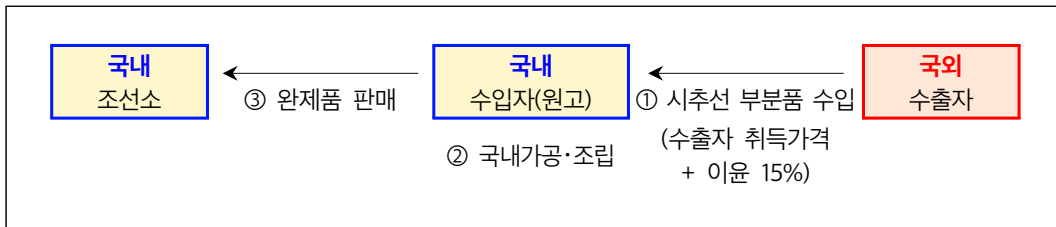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조건 또는 사정)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3. 조건 또는 사정 관련 판례

1) 조건·사정을 인정한 판례¹⁾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시추선 제작에 사용되는 부분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후, 이를 국내 조선소에 완제품 형태로 납품했다. 문제는 수출자가 원고에게 판매한 시추선 부분품의 가격이, 수출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에 ‘이윤 15%’를 가산한 금액으로 설정됐다는 점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이윤 15%는 실질적인 이윤이 아닌 세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가산’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수출자로부터 시추선 부분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출자에게 위탁가공을 의뢰하고 있었고, 원고는 시추선 부분품 가격에 포함된 이윤 15%를 위탁가공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고 있었다. 즉, 물품가격에서 이윤으로 보이던 금액이 결국 위탁가공비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환류되는 구조였고, 전체 경제적인 효과를 볼 때 원고의 이익은 증가하고 수출자의 이익은 감소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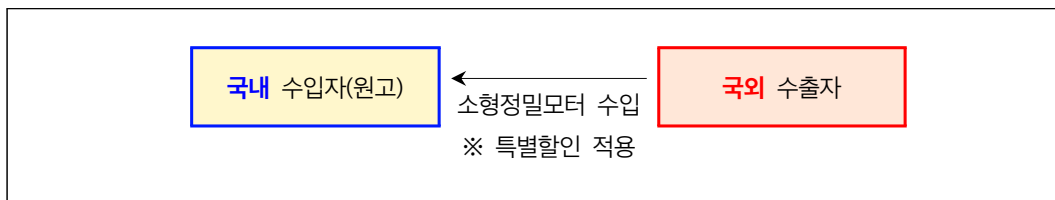
또한 법원은 “이 유상물품의 거래는 원고의 관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성격에도 주목했다. 수출자는 이윤 없이 본인이 취득한 금액으로만 판매하면 제1평가방법 적용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니, 일단 이윤을 얹어 판매한 것으로 형식을

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762, 서울고등법원 2021누35089, 대법원 2022두37981 : 최종 국가 패소했으나, 법원은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여부에 관한 것은 인정했다.

갖추고 그 금액을 다시 가공비 명목으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관세 리스크를 관리해 왔는데, 부분품의 매매가 외형상으로는 독립적인 상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세 문제를 피하고자 설계된 거래임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거래의 성립이나 가격의 결정 모두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사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입거래가 완제품 납품계약에 종속돼 있었고, 이윤 15% 역시 정상적인 상거래 상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아닌 실질 없는 명목적 이윤이며, 위탁가 공비를 통한 보전구조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가격 왜곡이 거래구조 전체에서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즉 이 판결은 조건·사정 판단에서 단순히 가격 수준의 적정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상거래 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 다른 계약이나 거래에 종속된 조건으로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와 부품거래와 완제품거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거래가격이 다른 거래의 조건에 의해 실질적으로 좌우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2) 조건·사정을 불인정한 판례²⁾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소형정밀모터를 장기간에 걸쳐 수입해 국내에 공급해왔다. 원고는 수출자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거래는 두 가지 유형의 가격구조로 이뤄진 점이 특징인데, 하나는 일본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통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일반 수입물품, 다른 하나는 국내 최종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원고가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특별할인율을 적용하는 특별수주물품이었다.

특별수주물품의 가격은 국내 최종 구매자의 주문을 전제로 형성된다. 원고는 국내 시장가격·경쟁사 정보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특별수주물품의 수입가격을 제안하고, 수출자가 그 가격에 동의하면 거래가 성립하는 구조였다. 만약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건은 즉시 거래가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특별할인가격은 일반 수입물품에 비해 상당히 낮게 형성됐다.

2)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331, 대구고등법원 2018누3760, 대법원 2019두48172

관세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개입된 결과라고 봐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먼저,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사정의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이유는 국내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거래처 유지, 장기적 영업 기반 마련 등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상적 상거래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특정기업들이 지속적인 거래 시 흔히 선택하는 전략적 형태이며, 가격 왜곡을 위한 비정상적인 요소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조건·사정 판단의 핵심 기준인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원고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출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수출자가 반대로 원고로부터 숨은 형태의 대가를 받아 간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저가 수입을 통해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을 실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거래가격이 낮게 형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격 왜곡을 인정할 수 없으며, 거래구조 전체에 걸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나타났는지가 조건·사정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건 또는 사정’이 거래가격을 왜곡했다고 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 관행에 비취 볼 때 ‘일정한 조건 또는 사정’이 없었더라면 실제의 거래 및 가격과 다른 거래 및 가격이 결정됐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실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가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로소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다.**

4. 시사점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조건·사정은 ‘가격의 수준’이 아니라 ‘거래의 성립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판례는, 조건·사정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격이 낮은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특히 3-1) 조건·사정을 인정한 판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품 거래가 다른 계약(완제품 납품계약)에 종속돼 가격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면, 가격 자체가 아무리 정상적 수준으로 보이더라도 이미 ‘거래 성립 단계’에서 조건·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 즉, 「관세법」상 조건·사정은 결과(가격)보다 경위(구조)를 중시하는 셈이다.

둘째, 조건·사정 판단에서 특히 눈여겨볼 요소는 ‘숨은 경제적 흐름’이다. 법원은 조건·사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가격 수준만을 보지 않고, 거래 전반에서 수입가격과 별도로 이동하

는 가치가 있는지 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은 것을 볼 수 있다. 3-2) 조건·사정을 불인정한 판례 사례는 거래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숨은 대가를 제공한 흔적이 없고, 거래 전체 구조에서도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이동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3-1)의 사례는 수입가격에 가산된 15%의 이윤이 위탁가공비를 통해 되돌아오는 구조가 존재하고, 이는 단순한 할인이나 영업 전략을 넘어 경제적 가치가 수입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으로 판단돼 조건·사정이 인정됐다. **이처럼 판례는 단순히 “가격이 낮은가”를 문제삼기보다, 다른 거래나 대가관계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를 살펴본다. 결국, 숨은 경제적 흐름이 있는지의 여부가 조건·사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시그널로 기능하는 것이다.**

셋째, 거래가격이 독립적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법원은 “가격이 독립된 상거래의 결과인지”를 확인한다. 법원은 3-2)의 사건에서는 수입가격이 국내 영업전략·경쟁상황·거래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사유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독립적 가격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3-1)의 사건에서는 부품가격이 완제품 납품조건과 결합돼 사실상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봐 조건·사정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처럼 판례는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해당 가격이 독립적 의사결정의 산물인지, 아니면 다른 계약에 종속돼 있는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건·사정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가격심사의 영역이 아니라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영역임을 시사한다.

5. 맺음말

관세평가에서 조건·사정은 여전히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이다. 가격의 외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거래의 성립 배경이나 경제적 가치의 흐름, 계약간 연계성 등 ‘가격 바깥’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최근 판례들은 조건·사정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확장해서도 보지 않으며, 각 사건의 실제 거래구조와 경제적 효과에 중심을 두고 면밀히 살핀다.

결국, 조건·사정은 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당국과 기업 모두, 조건·사정을 ‘제1방법을 배제하는 규정’으로만 보기보다,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정장치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제1방법의 안정성과 조건·사정의 공정한 적용이 함께 담보될 것이다.

찌든때 없애는 연마세정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

집 안 청소를 하다 보면 ‘이 제품, 도대체 어느 호에 분류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세제를 꺼낸 줄 알았는데 연마도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연마제로 보기엔 애매한 그 제품. 바로 연마 세정제다. 소비자에게는 그저 싱크대나 욕실의 묵은 때를 지워주는 든든한 조력자일 뿐이지만, 품목분류에서는 꽤나 골치 아픈 존재다.

보기에는 단순한 청소용품 같지만, 연마 입자·계면활성제·향료 등 여러 성분이 결합하면서 기능도 다층적으로 된다. 이 때문에 품목분류에서는 “세정제인가?”, “연마제인가?”, “둘 중 뭐가 주된 기능인가?”를 두고 매년 작은 토론이 벌어진다.

연마세정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이뤄지는지 다음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쿼츠(SiO_2), 음이온계면활성제, 리모넨 등을 혼합한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에 해당하는 제3402.49-0000호로 신고했다.

먼저 제3402호 해당 여부를 살펴보자. 다음은 제3402호 해설이다.

(II) 조제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 <중략> ...

(B)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

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즉, 조제 세제 및 청정제의 경우 계면활성제 같은 필수 구성성분에 보조성분(부스터, 빌더 등)을 가진 물품으로 표면의 오물을 유화시켜 제거하는 세정제다.

허나, 제3402호 해설서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

(c)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나 단지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경우에 따라서, 제3403호·제3405호·제3808호·제3809호·제3824호 등)

해당 물품은 연마제 성분(퀴츠, SiO₂)이 70% 정도 포함됐고, 계면활성제가 일부 포함된 제품으로 본 물품이 세정제인지 연마제인지 판단하자면, 계면활성제가 일부 기름 성분 등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연마제의 미세한 입자로 연마해 일반 세정제로 씻기지 않는 찌든 때를 벗겨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5.40호에는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이 분류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은·구리 등)용의 광택제와 크림, **조리용품·물 버리는 곳·타일·난로 등을 닦는 데 사용하는 페이스트(paste) 상태와 가루 상태 조제품**과 가죽 광택제와 크림과 같은 유사 조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조제품은 간혹 소매용으로 되어 있으며 보통 액체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가루 모양·둥글넓적한(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 등으로서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연마제 성분(퀴츠, SiO₂)을 기본 재료로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혼합·조제해 조리기구, 오븐 등의 일반 세정제로 닦이지 않는 기름때를 연마해 제거하는 연마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405.40-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3402.49-0000 (FGB1 0%)	Scouring preparations	3405.40-0000 (FGB1 0%)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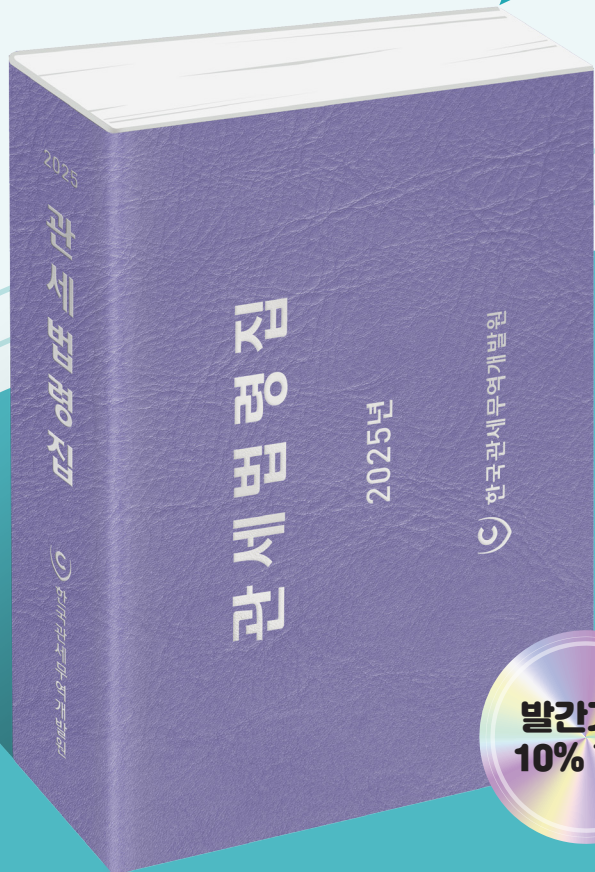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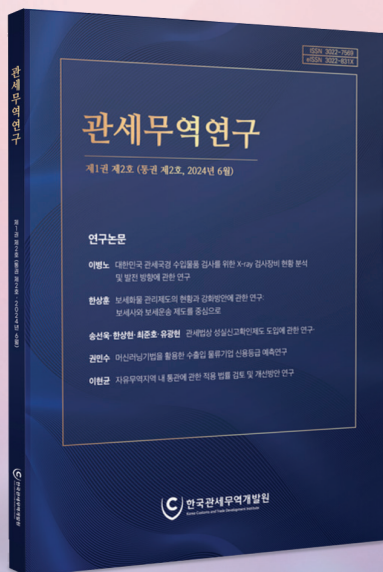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